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30437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3043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32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소573379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태환, 김용현, 김윤찬, 안병용

피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길기범, 방인석, 유병일, 하동규

판결 선고 2019. 4. 25.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32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